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 28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8757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5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

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제5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마. 자금의 사용목적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사항

제15954호

관

부

2005. 3. 28. (월요일)

가. 회사의 개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내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다. 재무에 관한 사항(설립중인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사회 의사록”을 “이사회 의사록(그 유가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제5조의5제2항제3호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감사인”으로 한다.

제5조의9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을 “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표제부에는”을 각각 “표제부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각목의 1의 자”를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8”을 “제86조의3 내지 제86조의10”으로 한다.

제11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5 본문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3제2항중 “그 본점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를 “그 본점이 그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에”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중 “매결산기에 영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당

기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을 “영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그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2 미만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5제3항중 “60일이내에”를 “90일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본점”을 “본점 및 지점”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인력 및 물적시설”을 “물적 시설”로 한다.

- 3. 대표이사·임원 등 인적 구성원에 대한 사항
-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영업의 종류”를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5의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영업의 종류”를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2. 영업기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5. 그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등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
-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2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그 밖에 그 증권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5조제2호 본문중 “제2조의3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을 “이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그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의 결과 주권의 매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의3제2항중 “산정기준은”을 “산정기준과 그 예치시기 및 예치주기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중 “제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의8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증권회사는 월별 및 반기별 거래내용과 잔고현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선물거래법」의 규정에 따른 선물시장을 말한다) 밖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이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라 한다)와 그 거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통화 또는 일반상품(「선물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다. 신용위험의 지표

제3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다목 중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유지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

제36조의2제5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카목중 “차목”을 “파목”으로 하여 동목을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자목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간행물·도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카. 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매매의 중개 또는 자문업무

다.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간행물·도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무

파. 업무제휴의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제36조의3제3호중 “고객에게”를 “고객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로 하고,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6제2항제1호중 “영업행위”를 “영업(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를 위한 영업을 포함한다)행위”로 한다.

제37조의6제3항제3호중 “주식 또는 3억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외에 당해 증권회사와의 거래잔액”을 “제3호외에 그 증권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증권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한다)잔액”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9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83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2. 회사의 개황
-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4. 주주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다)의 총액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제8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1조원”을 “5천억원”으로 한다.

④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 명세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의5제4항중 “이자락이”를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 하며, 동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6제6호중 “근로자증권저축에 따른 매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9절의 규정에 따라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주식과 관련된 저축을 통한 매매”로 한다.

제84조의7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할 것

제84조의2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7조의6제3항제4호의 규정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증권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그 금융기관과의 정형화된 거래”로 본다.

제84조의27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제84조의2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을 “자기자본규제비율요건”으로 한다.

3의2. 신용위험과 연계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위험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5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

200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86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로, “보유상황”을 “보유상황·보유목적”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유목적

3의2. 변동사유

제8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의5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8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86조의8로 하고, 제86조의8을 제86조의10으로 하며, 제86조의7 및 제8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7(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법 제191조의13제5항(「상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에 한한다)·제191조의14 및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규정된 권리

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제86조의8(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라 함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주식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86조의9(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의 보고내용 등)

①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와 이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 1. 제86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 2.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86조의7의 규정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②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86조의8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는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86조의10(중전의 제86조의8)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00조의3”을 “법 제200조의3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0조의2제4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84조의28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4조의28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3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8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이유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339호, 2005. 1. 17. 공포, 2005. 3. 29. 시행)되어 기업인수·합병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의 발행인이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개매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지분 등을 유가증권으로 인정(영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5 및 제8호 신설)

- (1) 상법상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각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함.
- (3)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회사의 경영업무 범위의 확대 등(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제1호다목, 영 동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동조제4항제1호·제3호 삭제)

(1) 증권회사는 신탁업 및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의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위한 자기 자본 요건을 삭제하며,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겸영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증권회사의 업무기반을 확대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의 개선(영 제83조의3제4항 내지 제6항)

(1)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어,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되,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

과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함.

(3) 종속회사를 포함한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목적 명시(영 제86조의7 및 제86조의9 신설)

(1) 주식등의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하고,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내용과 보고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등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주식을 대량보유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함.

(3) 기업의 인수·합병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재정경제부령 제429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3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의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을 “(유가증권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조의3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일 것(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에 한한다)

가. 주권

나. 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중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2. 발행자는 증권 또는 증서의 인도와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수령